

제 288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제2차 총무위원회(2025.9.8.)

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검 토 보 고 서



총 무 위 원 회

[전문위원 박혜진]

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5. 8. 22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25. 8. 22.

2. 제안사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.

3. 기금개요

가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- 「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)
- 「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8조

나. 운용방침

-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·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·운용하는 특정 자금임
- 자금 운용체계를 총괄부서와 운영부서로 이원화하여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
 - 총괄부서 : 기획예산담당관
 - 운영부서 : 각 기금관리운영 관·과·소
-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·운용

다. 기금조성현황(총무위원회 소관)

기금명	2024년도 말 조성액 ①	2025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5년도 말 조성액 ④=①+②-③	증 감 ⑤=④-①
		수입②	지출③		
합계	72,170,769	2,713,695	43,313,611	31,570,853	△40,599,916
통합재정 안정화기금	63,539,358	2,168,670	42,200,000	23,508,028	△40,031,330
고향사랑 기금	842,509	360,034	217,991	984,552	142,043
식품진흥 기금	132,137	50,820	50,020	132,937	800
중소기업 육성기금	4,578,768	35,750	800,000	3,814,518	△764,250
아름예술제 진흥기금	525,173	14,087	4,000	535,260	10,087
사회복지 기금	2,552,824	84,334	41,600	2,595,558	42,734

4.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

가. 통합재정안정화기금

1) 연도말 기금조성액

[단위 : 천원]

구 분	'24년도말 조성액 ①	'25년도 기금운용계획			'25년도말 조성액 ②=①+④
		수입②	지출③	증감 ④=②-③	
계	63,539,358	2,168,670	42,200,000	△40,031,330	23,508,028
재정안정화계정	51,414,810	364,629	41,000,000	△40,635,371	10,779,439
통합계정	12,124,548	1,804,041	1,200,000	604,041	12,728,589

2) 수입계획

○ 재정안정화계정

[단위 : 천원]

항 목	변경수입액	당초수입액	증 감	증 감 사유
합 계	51,779,439	51,779,439	0	
공공예금이자수입	364,629	364,629	0	
예치금 회수	51,414,810	51,414,810	0	
기타회계전입금	0	0	0	

○ 통합계정

[단위 : 천원]

항 목	변경수입액	당초수입액	증 감	증 감 사유
합 계	13,928,589	12,517,630	1,410,959	
공공예금이자수입	393,082	393,082	0	
예치금 회수	12,124,548	12,124,548	0	
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	1,410,959	0	1,410,959	

3) 지출계획

○ 재정안정화계정

[단위 : 천원]

항 목	변경지출액	당초지출액	증 감	증 감 사 유
합 계	51,779,439	51,779,439	0	
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	10,779,439	10,779,439	0	
일반회계 전출금	41,000,000	41,000,000	0	

○ 통합계정

[단위 : 천원]

항 목	변경지출액	당초지출액	증 감	증 감 사 유
합 계	13,928,589	12,517,630	1,410,959	
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예치금	11,228,919	11,228,919	0	
수질개선특별회계 예치금	88,711	88,711	0	
공기업특별회계 예치금	1,410,959	0	1,410,959	
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	1,200,000	1,200,000	0	

나. 고향사랑기금

1) 연도말 기금조성액

[단위 : 천원]

구 분	'24년도말 조성액 ①	'25년도 기금운용계획			'25년도말 조성액 ⑤=④+①
		수입②	지출③	증감 ④=②-③	
고향사랑기금	842,509	360,034	217,991	142,043	984,552

2) 수입계획

[단위 : 천원]

항 목	변경수입액	당초수입액	증 감	증 감 사유
합 계	1,202,543	1,166,108	36,435	
공공예금이자수입	2,273	2,038	235	
기타이자수입	35	35	0	
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	7,926	7,926	0	
기부금 수입	349,800	313,600	36,200	25년 하반기 지정기부사업 모금 목표액
예치금 회수	842,509	842,509	0	

3) 지출계획

[단위 : 천원]

항 목	변경수입액	당초수입액	증 감	증 감 사유
합 계	1,202,543	1,166,108	36,435	
사무관리비	20,000	20,000	0	
예치금	984,552	981,108	3,444	
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사업	30,000	30,000	0	
거창 유소년 축구단 지원사업	35,000	35,000	0	
고향사랑 공연개최	100,000	100,000	0	
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사업	21,951	0	21,951	
거창형 야간약국 지원사업	11,040	0	11,040	

5. 검토의견

가. 통합재정안정화기금

-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「지방기금법」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.
- 우리군은 「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관리·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2020년부터 설치·운용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‘통합계정’ 과 ‘재정안정화계정’ 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각 회계·기금의 여유재원 예탁·예수 창구를 일원화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음.
-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사항은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1,410,959천원을 통합계정 수입으로 받아 다시 예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변경내용을 살펴보면
- 하수도 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 1,770,959천원이 발생하였고, 이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(군비) 210,000천원과 남상 청림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(도비) 36,000천원을 삭감하여 최종적으로 1,524,959천원의 자본적수입이 발생하였음.
- 자본적수입 1,524,959천원 중 남상 청림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(도비) 36,000천원을 삭감하고, 마리 진산지구 등 2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추가로 150,000천원을 지출하고 남은 수입 1,410,959천원을 통합계정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

※ 계정별 재원 조성과 주요 용도

계 정	재원조성	주요용도	비고
통합계정	타 회계·기금의 예수금, 타 회계·기금에 용자한 원금·이자수입, 통합기금 운용 수익금 등	예수금 원리금 상환, 타 회계·기금에 대한 자금 용자	
재정안정화계정	세입, 순세계잉여금 등 재정수입 증가에 따른 일반·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	지방채 상환, 대규모 재난·재해 및 심각한 경기침체 등 현안 발 생이나 세수 여건 악화 시 일반회계 등 전출	

※ 공기업특별회계(하수도 분야)

- 자본적수입예산서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
합 계	4,270,959	2,746,000	1,524,959
일반회계 전입금(군비)	0	210,000	△210,000
남상 청림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(도비)	0	36,000	△36,000
순세계잉여금	4,270,959	2,500,000	1,770,959

- 자본적지출예산서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
합 계	1,810,959	286,000	1,524,959
남상 청림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	0	36,000	△36,000
마리 진산지구 등 2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	400,000	250,000	150,000
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	1,410,959	0	1,410,959

나. 고향사랑기금

- 이 기금의 목적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, 지역 공동체 사업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우리군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2023년 부터 고향사랑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.
- 2025년도 기부금 수입은 당초 11억 6,610만 8천원에서 공공 예금이자수입 23만 5천, 25년 하반기 지정기부사업 모금 목표액 3,620만원을 증액한 12억 254만 3천원으로 예상함.
- 2025년도 총 기부금 수입액 12억 254만 3천원 중 당초 지출 계획 11억 6,610만 8천원에서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2,195만 1천원, 거창형 야간 약국 지원사업 1,104만원을 추가 하여 총 12억 254만 3천원을 지출할 계획임.
-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과 거창형 야간 약국 지원사업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명시한 지역 주민의 보건 증진에 해당하는 사업이므로 고향사랑기부금 사용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됨.

<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>

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(이하 "고향사랑기금"이라 한다)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, 제3항에 따른 모집·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 다만,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 <개정 2024. 2. 20.>

1.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
2.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
3.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
4.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□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(기획예산담당관) [시행 2024. 9.25.]

제3조(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합 계정(이하 “통합 계정”이라 한다)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제4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 (이하 “재정안정화 계정”이라 한다)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.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해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일반회계 세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입액의 합이 최근 3년간 해당 세입의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. 다만, 가목의 경우 “합”을 “증가율”로 “평균금액의 110퍼센트”를 “평균 증가율의 10퍼센트”로 본다.

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: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의3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: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

해당하는 금액

다. 「지방교부세법」 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세: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2.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3.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③ 군수는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 각 호의 요건(제2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포함한다)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.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해야 한다.

1. 군의 세입 중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입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해당 금액의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

2.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

3. 긴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

4. 채무부담 사업비

5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
6.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

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제4항제5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(2023.11.29.)

□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(약칭: 고향사랑기부금법)

[시행 2025. 1. 1.] [법률 제20314호, 2024. 2. 20., 일부개정]

제7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4. 2. 20.>

1. 호별 방문

2.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
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,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2. 20.>

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(이하 “고향사랑기금”이라 한다)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

하고, 제3항에 따른 모집·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 다만,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 <개정 2024. 2. 20.>

1.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2.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3.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4.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(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)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2. 20.>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4. 2. 20.>

□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(전략담당관) [시행 2023. 1. 1.]

제8조(기금의 사용 목적)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고향사랑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관리·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, 인쇄비,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